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2026. 10.



보건복지부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2
III. 추진 방향	6
IV. 추진 과제	7
1. 사전차단	7
2. 신속적발	10
3. 사후관리	11
【참고1】 주요 과제별 추진 일정	13
【참고2】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	14

I. 추진배경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 후, 지속적인 양적 성장 기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등에 기반
 - *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재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
- 전자바우처는 장애인활동지원('07년~)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어, 기존 공급자 중심·예산 지원 → 개선 수요자 중심·경쟁 방식으로의 전환 도모
- 특히 전자바우처는 ‘제공자 간 경쟁, ‘이용자 편의성, ‘관리 효율성을 기반으로 지속 확대* 중이며,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
 - * (재정 규모) ('23) 4.1조원 → ('24) 4.6조원 → ('25) 5.2조원
 - ** (이용자 규모) ('23) 68만명 → ('24) 75만명 → ('25) 85만명

◆ 양적 성장 대비, 부정수급 증가·확산 등 질적 저하 문제 상존

- 이용 규모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규모도 비례하여 증가* 경향, 특히 최근 재정규모 확대 속도를 넘어선 증가 추세 기록 중
 - * (건수) ('21) 25 → ('22) 26 → ('23) 36 → ('24) 62 → ('25) 94만건
(적발액) ('21) 73 → ('22) 117 → ('23) 185 → ('24) 297 → ('25) 478억원
- 바우처 사업이 장기간 운영되며, 부정수급 행태의 ‘조직화(제공자-이용자 간 공모) 및 ‘대규모화(기관당 적발액 규모↑) 등 문제 다각화
 - * (제공기관 1개소 당 평균 적발액) ('23) 1.1 → ('24) 1.3 → ('25) 1.6억원

◆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단계적 관점의 정책 수립 필요

- 전자바우처 제도의 수용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통한 부정수급 최소화가 필요한 시점
- 최근 부정수급이 다양화·규모화되고 있는 만큼, 부정수급 급증 원인에 대한 구조적·종합적 진단을 통한 대응방안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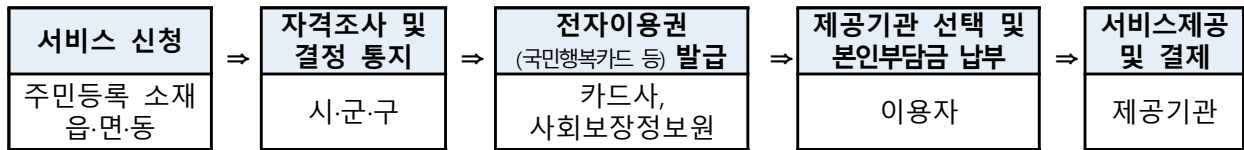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개요

- **(정의)**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금액·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으로, 서비스 신청, 이용, 지불·정산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

< 전자바우처 제공방법 및 절차 >



□ **(특징)**

- ① **(이용 편의성)** 서비스 구매력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② **(관리 효율성)** 정책목적 및 취지에 따라 선택권 조정·통제 가능
- ③ **(공급 관리)** 제공기관의 별도 자격 설정이 가능하며, 제공자 간 경쟁 유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 담보 가능

< 급여형태별 주요 특징 비교 >

구 분	현물급여	현금급여	이용권(바우처)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보장	보장
소비형태의 사회통제	가능	불가능	가능
공급자의 경쟁	제한	-	유발

- **(추진경과)** '07년 도입 후 ^재정 규모, ^공급 인프라, ^이용자 등이 꾸준히 확대되어, 사회서비스 분야 대표적인 서비스 전달체제로 안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 통계 >

(단위 : 조 원, 개,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정규모	1.5	1.8	2.4	2.5	3.0	3.4	4.1	4.6	5.2
제공기관	8,749	9,197	10,319	10,777	11,258	11,977	12,547	14,499	16,041
제공인력	132,197	140,692	156,629	161,500	175,974	196,350	206,762	227,337	257,402
이용자	510,589	540,270	614,393	597,914	625,222	648,418	680,068	754,197	847,471

2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체계

□ (추진체계)

- (복지부) 부정수급 관리체계 구성·운영 등 총괄
- (사회보장정보원(사보원)) 부정수급 심사 및 현장조사 등 실무 담당
- (지자체(시·군·구)) 부정수급 조사 및 적발 후 사후제재·관리 등 담당

□ (관리체계) ①청구비용 사전·사후심사, ②부정수급 공익신고 조사 및 ③FDS(Fraud Detection System, 부정수급탐지시스템)를 통한 관리 병행

① (청구비용 심사)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구 내역에 대해, 비용지급 사전·사후 심사를 통해 비용지급 보류 또는 환수

- (지급 前) 출국, 사망, 심야·반복결제 여부 등 심사 후 비용지급 보류
- (지급 後) 결제 시 장기입원 여부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 조사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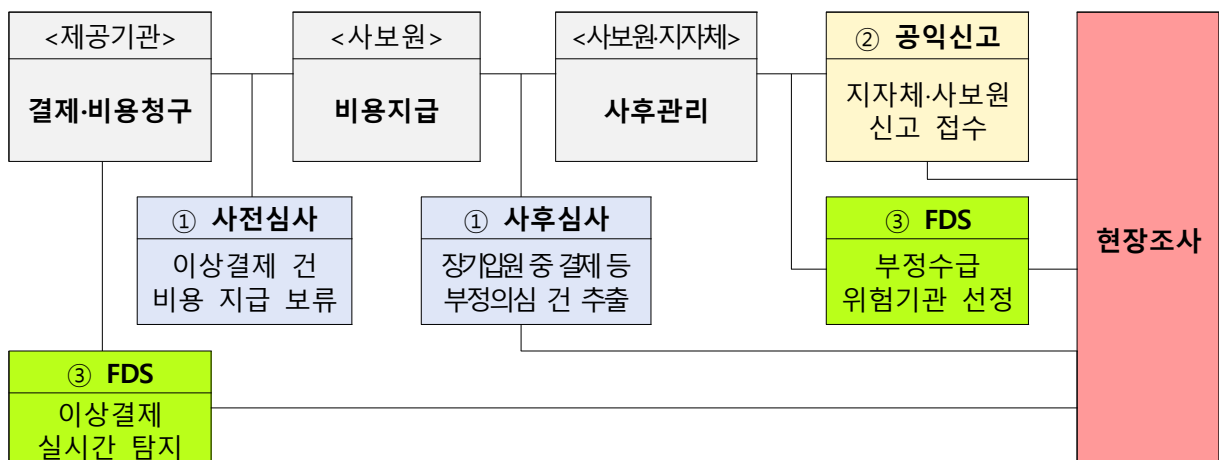
② (공익신고 조사) 사보원(클린센터) 및 지자체에서 공익신고 접수 → 현장조사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제재 연계

- (추진절차) ①현장조사(사보원·지자체) → ②부정수급 적발 및 관련 자료 인계 (사보원→지자체) → ③행정처분 및 환수 등 결정 (지자체)

③ (FDS시스템)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결제 적발, ^기관별 부정위험도를 점수화하여 고위험군 추출 등 부정수급 탐지

- 이상결제 건 및 고위험 기관 대상 현장조사 연계 → 부정수급 적발

< 부정수급 관리체계도 >



③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현황

- (연도별) 재정규모 증가에 비례하여 점진적 증가 추세 기록 중, 특히 최근 5년간('21~'25년) 부정수급 규모·비중이 증가하는 경향

* (제도변화) ('20)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22년) FDS 도입, ('23년~) 현장조사 인력 확대 등

<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 >

연도	재정 규모 (조 원)	적발액(억 원)		결제 건수 (건)	적발 건수(건)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1년	3.0	73.4	0.25	57,215,670	252,490	0.44
2022년	3.4	117.3	0.34	61,207,719	260,084	0.42
2023년	4.1	185.4	0.46	66,923,403	356,116	0.53
2024년	4.6	297.1	0.64	72,755,350	620,568	0.85
2025년	5.2	478.8	0.91	79,073,997	941,905	1.19

- (사업별) 관리감독이 취약한 재가방문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적발 증가

< 사업별 부정수급 적발액 ('25년 기준) >

(단위 : 억원)

사업명	결제액		적발액		결제 대비 적발 비중 (b/a)
	(a)	%	(b)	%	
계	48,187.8	100	478.8	100	0.9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39,580.2	82.1	346.4	72.4	0.8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420.4	5.0	67.8	14.2	2.80%
발달재활서비스	2,153.0	4.5	32.1	6.7	1.4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373.3	7.0	27.9	5.8	0.83%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265.5	0.6	0.04	0.0	0.02%
정신건강 심리상담	395.4	0.8	4.5	0.9	1.14%

* 적발액은 최종 처분 금액이 아니며, 관할 지자체의 실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유형별) 제공기관의 ①바우처카드 소지 후 임의결제(146억, 31%),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하는 ②허위청구(63억, 13%) 유형 등이 다수 적발

(단위: 건,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252,490	73.4	260,084	117.3	356,116	185.4	620,568	297.1	941,905	478.8
카드소지	163,016	38.4	92,984	30	105,189	50.5	196,338	100.1	263,804	146.1
허위청구	25,498	11.4	49,468	15.1	61,540	29.1	74,754	30.2	122,780	63.2
그 외 기타	63,976	23.6	117,632	72.2	189,387	105.8	349,476	166.8	555,321	269.5

2 문제점 진단

◆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낮은 문제인식, 부정수급 발생 유도

- ▶ (사례) 제공인력(장애학생 부모) 간 공모, 서로의 자녀에게 서비스 제공한 것처럼 허위결제
- ▶ (시사점) 서비스 제공장소의 유동성 및 결제방식의 편의성 등으로 인해 관리감독이 어렵고, 제공기관·인력 및 이용자 모두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및 범죄인식이 낮음

- (구조적 취약성) 손쉬운 결제방식(카드 태그) + 방문형 서비스 방식(은폐 용이) → 누구라도 허위결제 유혹에 쉽게 노출
- (사회적 인식) 서비스 비용(보조금)에 대한 '눈먼 돈' 인식 일부 존재, 제공기관의 관리역량과 부정수급 차단 의지도 강화 필요

◆ 부족한 조사 역량·인프라, 부정수급 적발 지연으로 귀결

- ▶ (사례) 공익신고 건에 대한 현장조사 비율은 평균 45%, 조사지연 및 적체 발생
- ▶ (시사점) 현장조사를 위한 인력·조직 확대 등 조사 인프라 확충 필요

- (인력 부족) 현장조사의 실효성(부정수급 적발률 97%)은 높으나, 조사인력 부족으로 공익신고 건 조사·처리에 일부 지연 발생
* 연도별 공익신고 처리율 : ('23) 48.8% → ('24) 33.3% → ('25) 53.1%
- (기능 부족) FDS의 부정수급의 탐지 정확도는 약 63.5% 수준,
* AI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학습 및 *알고리즘 개선 등 필요

◆ 경미한 제재 수준 + 사후관리 미흡 → 부정수급 예방효과 미미

- ▶ (사례) 부정수급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사업별 근거법령에 따라 제재 수준(영업정지과징금 등) 상이
- ▶ (시사점) 제재 수준이 낮은 사업은 부정수급 유인에 영향 가능, 제재체계 개편 필요

- (상당한 제재수준)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부정수급 제재수준이 他 유사 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 필요
* 「장애인활동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사후관리 미흡) 부정수급 적발 후 사후관리(환수결정, 징수 등) 단계의 관리체계 보완 필요, 과징금 등 징수금 체납 시 추가 제재수단 부재 등

◆ 부정수급 급증의 원인은 *사업구조, *인식, *관리체계 등 널리 분포, 부정수급 예방부터 제재까지 종합적·단계적 측면의 대응방안 수립 필요

Ⅲ. 추진 방향

방향	부정수급 예방부터 제재까지 전 주기 관리감독 강화	
목표	▶ IT기술을 접목한 부정수급 예방체계 구축 ▶ 관계기관 협조, SI기술 등을 활용한 적발 강화 ▶ 부정수급에 대한 강화된 제재 기반 마련	
과제	사전차단	1. 부정수급 사전 차단 체계 강화 ① 결제수단 기능 개선 ② 부정수급 심사·평가연계 강화 ③ 이용자·제공기관의 인식 개선
	신속적발	2. 부정결제 탐지 고도화 및 조사 인프라 확충 ① FDS 기능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② 부정수급 조사 인프라 확충
	사후관리	3. 부정수급 제재 및 환수의 실효성 제고 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② 부정수급 환수·체납 관리체계 개선

IV. 과제별 주요 내용

1 [사전차단] 부정수급 사전 차단 체계 강화

1 결제수단 기능 개선

◇ 결제 시 ^위치정보 검증, ^이용자 승인 강화를 통한 허위결제 원천 차단

□ (위치정보 검증) 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제공인력의 위치정보 확인 후, 위치정보 미충족 시 비용 지급 보류* → 허위청구 사전 차단

* (예시) 서비스 시작 및 종료 결제 시 제공인력과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검증하여, 서로 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 결제액 지급 보류

○ 위치정보 검증을 위한 제도·인프라·결제 검증체계 등 검토 및 전자바우처 결제앱 기능 개선 관련 시스템 개발 등 추진*(~27.下)

* 위치정보 수집기능 적용은 사업별 특성 및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 (이용자승인 강화) 이용자 승인이 필요한 대체결제 수단 적용·확대 → 카드소지 유형*의 부정수급 발생 구조적 차단

* 바우처카드 결제는 이용자 없이도 카드만 있다면 결제가 가능해 허위결제 유인 ↑
→ QR, 생체인증 등 결제단계에서 이용자 참여를 필수화하여 허위결제 사전 차단

○ ^QR 결제, ^생체인증 결제(지문 활용) 등 실물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 도입 및 사업별 적용 확대*

* (기준) QR결제 9개, 생체인증 4개 사업 도입 중(26.9월 기준) → (확대) 전 사업 대상 적용

- 특히 QR결제는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동일장소에 있어야 결제 가능
→ 장기적으로 QR결제를 기본 결제방식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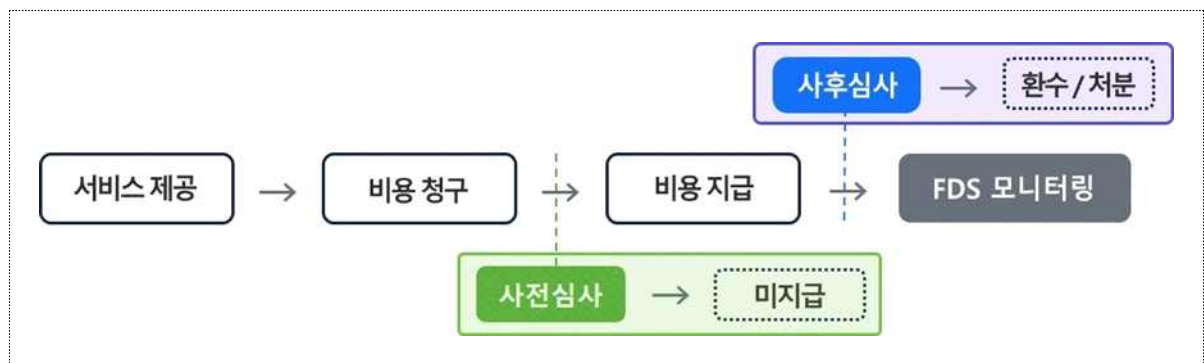
2 부정수급 심사·평가연계 강화

◇ 부정수급 ‘사전·사후심사 강화 및 ‘품질평가 연계 등 제도적 수단 활용

- (심사체계 강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청구된 제공비용 지급 전·후 단계별 적정성 심사체계* 강화 (사회보장정보원)

* (지급 前) 해외출국, 연속심야결제, 사망의심 등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 적발 시 지급 보류
(지급 後) 입원 중 결제, 장기요양 중복이용 등 공적정보 연계를 통해 적발 시 사후 처분

< 비용지급 전·후 심사 체계도 >



- (지급 前) 각 서비스별 부정패턴 정비 및 심사유형 다양화 등 심사체계 고도화를 위한 관련 연구 추진 중 (~'26.10월)

- (지급 後) 심사 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하여 심사체계 강화('26.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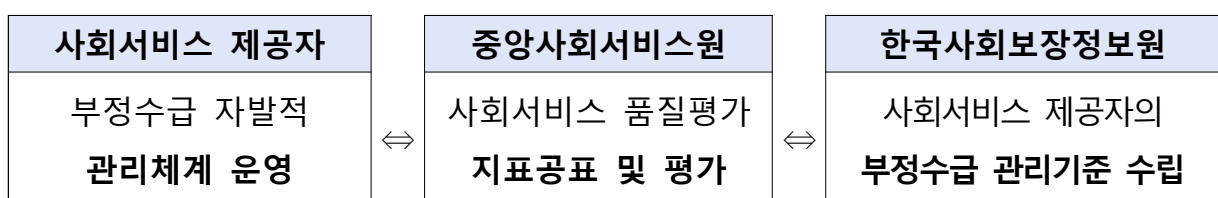
* (확대 계획)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1개 사업 → (확대) 13개 바우처 사업 전체

- (평가 연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등에서 제공기관의 자발적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전반적 수준 향상 도모

* 품질평가 지표로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노력 여부' 추가하여 개선 ('27.1~)

-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제공자의 부정수급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리체계 강화

< 각 주체별 역할 >



③ 이용자 · 제공기관의 인식 개선

◇ 교육·홍보 등을 통한 인식 개선 → 자발적인 부정수급 억제 효과 유도

□ (제공기관 교육) 제공기관의 자체적인 부정수급 관리 역량 강화 제고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확대

○ (교육) 기존 수요조사 기반 교육에 더해, 부정수급 다빈도 발생 지역 대상으로 관내 제공기관 전수 교육 등 추진 (지자체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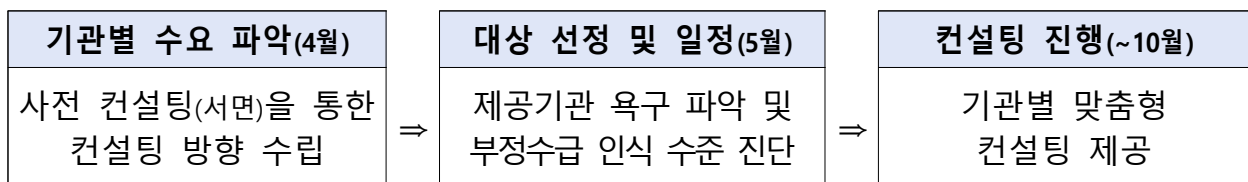
- 또한 서비스 종사자 및 지자체 담당자 등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실시간+상시) 병행 추진으로, 적극적인 교육 참여 독려 중

* (교육 추진 실적) ('24) 1.2만명 → ('25) 1.0만명 → ('26.8월) 4.0만명

○ (컨설팅) 지역별 신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방지방안 공유 등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희망 기관(10개 미만)을 소그룹으로 묶어, 제공기관별 욕구 및 부정수급 인식 수준 진단에 따른 그룹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 제공기관 부정수급 컨설팅 절차 >



□ (홍보·소통)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공익신고 독려를 위해, ^다빈도 부정수급 사례 및 ^신고·상담방법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온라인)유관기관 누리집, 유튜브 활용, (오프라인)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안내·홍보물 배포 등

○ 기존 연 2회 → 강화 분기별 1회 이상 등 홍보·소통 수준 강화

○ 부정수급 공익신고 확대를 위해, 집중·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검토

2 [신속적발] 부정결제 탐지 고도화 및 조사 인프라 확충

① FDS 기능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 딥러닝 도입 등 FDS 고도화 및 FDS 기반 모니터링·조사 확대

- **(FDS 기능개선)** 최신 AI 기술(딥러닝)을 FDS에 적용하여 부정수급 탐지기능 보완(’27.下) → 부정수급 ▲조기발견, ▲적중률 향상 등 가능
 - 또한 FDS와 전자바우처시스템 간 시스템 통합 구축으로 정보 연계 강화 및 관리 효율성 제고
- **(모니터링)** FDS 기반 ▲의심결제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 활성화
 - 빅데이터, AI, 패턴 분석에 기반한 실시간 부정결제 탐지를 강화하여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 대응
 - FDS에서 탐지한 부정수급 의심 결제내역의 지자체 상시 공유 → 지역 기반 부정수급 관리 강화 지원 (’27.7~)

② 부정수급 조사 인프라 확충

◇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 기능 강화,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조사역량 보완

- **(지역센터* 강화)** 그간 ▲중부센터(’24년), ▲대구·경북센터(’25년), ▲부산센터(’26년), ▲광주센터(’26년) 설치 → 주요 거점별 조사 역량 보완
 - * (주요기능) ① 지역별 부정수급 의심 건 현장조사 수행, ② 이상결제 실시간 모니터링 등
 - 센터별 출장비 등 운영비용을 확대하여, 신속한 현장조사 지원(’27년~)
 - * 지역센터 조사인력 추가 투입, 부정수급 다빈도 권역의 지역센터 확대 등 방안도 검토
- **(합동조사 운영)** 사회서비스 유관기관 간 합동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하여 조사 효율성 강화 및 현장조사 지연 해소
 - 복지부-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국민연금공단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 점검 (’26.7~8월, 향후 반기별 1회 이상 등 정기적 추진)

3 [사후관리] 부정수급 제재 및 환수의 실효성 제고

1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 부정수급 관련 ^처분 기준 및 ^품질평가 연계 강화 등 사후제재 실효성 제고

- (처분기준 강화) 他 유사제도* 등을 참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영업정지·취소, ^반복행위 기준 개선 (~'26.12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 기준을 유사 제도 수준으로 강화하여, 제재 실효성 제고 및 이용자·제공인력의 부정수급 유인 최소화

< 현행 처분기준 및 개선(안) 비교 >

	현행	개선(안)
과징금	- 부정수급 금액과 무관 * 연 총수입, 영업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
영업정지·취소	- 총수입 中 부정수급 비중 기준 영업정지일 산정 → 역진성* 발생 * 연간 총수입↑ → 처분 수준↓ 3차 위반 시 취소	① 부정수급 금액 + ② 총수입 대비 부정수급 비중을 조합 2차 위반 시 취소
반복행위 기준	최근 2년 기준	최근 5년 기준

- (평가연계 강화) 부정수급이 발생한 제공기관에 대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등급 하향 체계 강화

- 행정처분 결과와 연계한 평가등급 하향 체계*를 처분기준 강화와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 → 처분 - 평가등급 산정 간 연계성 강화

* (현행) (경고) 1등급↓ → (환수) 2등급↓ → (과태료) 3등급↓ → (과징금 이상) 최저등급

2 부정수급 환수 · 체납 관리체계 개선

◇ 단순 부정수급 적발뿐 아니라, 환수결정-체납징수 단계까지 관리 철저

- **(환수관리)** 부정수급 적발 후, 환수 결정액이 최종 징수까지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부정수급 적발 이후 제재·환수처분은 지자체(시·군·구) 소관사항으로, 환수결과 및 이행여부 등에 대한 총괄적 모니터링은 다소 미흡
 - 환수액 결정 시 신속한 통보(지자체 → 복지부·사보원)를 독려하고, 최종 징수 여부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환수결정의 실효성 제고
 - **(체납관리)** 제공기관이 과징금 등 체납 시, 후속 제재 강화로 강제력 보완
 - 현행 법령 상 과징금 납부지연 시 가산금 등 추가 제재수단 부재, 과징금 부과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과징금 등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 유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사회서비스이용권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 개정 검토
- * *산정방식·규모, *부과방식, *조기납부 유인방안 등 세부 검토 병행

< 과징금 관련 규정 비교 >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5조(과징금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은행법

제65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고 1

주요 과제별 추진 일정

과 제	일 정	협업기관
1. 부정수급 사전 차단 체계 강화		
결제수단 기능개선		
결제 시 위치정보 검증 체계 개발	~'27.12	사회보장정보원
결제 시 이용자 승인 강화	~'27.12	사회보장정보원
부정수급 심사·평가 연계 강화		
제공비용 지급 전·후 적정성 심사체계 강화	'26.9~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의 자발적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및 평가 연계	'27.1~	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이용자·제공기관의 인식개선		
부정수급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확대	지속	사회보장정보원
부정수급 관련 홍보·소통 수준 강화	지속	사회보장정보원
2. 부정결제 탐지 고도화 및 조사 인프라 확충		
FDS 기능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FDS 고도화(기능개선) 추진	~'27.12	사회보장정보원
의심 결제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 활성화	'27.7~	사회보장정보원
부정수급 조사 인프라 확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 운영비용 확대, 인프라 확충 등	'27.1~	사회보장정보원
합동점검반 구성 및 집중 관리기관 현장점검	'26.7~8	사회보장정보원
3. 부정수급 제재 및 환수의 실효성 제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부정수급 관련 처분기준 강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	~'26.12	사회보장정보원
부정수급-품질평가 간 연계 강화	'28.1~	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부정수급 환수·체납 관리체계 개선		
환수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리 실시	'27.1~	사회보장정보원
과징금 등 체납 시 가산금 부과 기준 제재 강화	'27.1~	행정안전부

참고 2

복지부 소관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 (자체지불형)

□ 총 13개의 자체지불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중

구 분	사업개요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②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지원서비스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 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④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 지원
⑤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 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⑥ 언어발달지원	· 장애부모의 자녀 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
⑦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부모 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⑧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의미있는 낮시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⑨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 후 시간에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⑩ 정신건강 심리상담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
⑪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돌봄 필요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지원
⑫ 긴급돌봄 지원사업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에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
⑬ 최종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 성인(18세~64세) 최종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및 주간 개인별·그룹형 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1:1 돌봄 지원체계 구축